

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12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 및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
- 주사무소(차고지)가 있는 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함.

3. 참고사항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“별표2”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“별표1”

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“별표2”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“별표1”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 규칙 제14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“별표2”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의무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 규칙 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“별표1”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면제대상)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구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◎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제5조 (면허 등의 기준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
2. 최저 면허기준 대수(臺數), 보유 차고 면적, 부대시설,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부대시설,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·공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
◎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4조 (면허기준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운송부대시설 등(이하 "시설등"이라 한다)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
2.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,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
3.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

-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“별표2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(2. 보유차고의 면적기준)

업 종	대 당 면 적 (최 저)
가. 시내버스운송사업,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	
1) 대 형	36㎡~40㎡
2) 중 형	23㎡~26㎡
3) 소 형	15㎡~18㎡
나. 택시운송사업	
1) 일반택시	13㎡~15㎡
2) 개인택시	10㎡~13㎡(다만,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</u>)

◎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제3조(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)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(증차)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화물자동차의 대수,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, 차고지 등 운송시설(이하 "운송시설"이라 한다),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◎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3조(허가기준)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“별표1”과 같다

“별표1”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

구 분	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
최저보유차고면적	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. 다만,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